

2020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 안내

<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교육과정>

■ 교육대상 및 시행법령

법 제22조에 따른 계측업에 종사하는 기술자
법 제27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

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(제30조)

① 상시계측관리의 공정성과 공신력의 확보 및 기술력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 훈련과정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한다.

1.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계측업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
 2. 제27조 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대행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술자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·고시하여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계측업 등록기준(제12조1항)

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마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 필요
직무분야가 토목분야에 해당하는
1) 고급기술자 2) 중급기술자 3) 초급기술자 4) 직무분야가 전기·전자분야에 해당하는 중급기술자

성능검사대행자 등록기준(제14조1항)

법 제30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중급기술자로서 직무분야가 기계분야, 전기·전자분야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필요

■ 교육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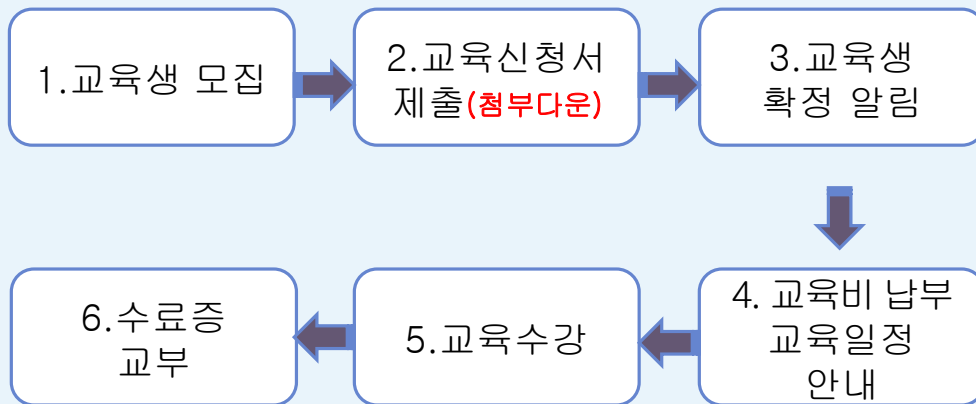
상시계측 관리분야

구분	교육기간	교육일수	인원(명)	교육형태
계	기본과정 : 7월 22일~28일	8일/ 기본+전문 56시간	30	사이버교육
	전문과정 : 7월 29일~31일			
1회차	7월 22일 ~ 7월 30일 (7/25, 7/26 주말)	7일/7h, 49시간		
	7월 31일 (현장실습)	1일/7h, 7시간		

■ 교육 장소

- 이론교육장소 : 이론교육과정 사이버교육으로 전환
- 상시계측관리 현장실습장소 :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현장 1개소
- 계측기기 성능검사 실습장소 : 한국계측기기 연구조합 (성능검사 실습장)
- ※ 교육장소는 수강인원 및 기타여건을 고려하여 추후 변경 가능

■ 수강절차



■ 수료기준

구분	평가원칙	평가방법	평가자
학습평가 (60%)	-담당 강사가 출제한 문제은행	-교육과정 마지막 차수 실시 -지필고사(100%)	담당강사진
과제평가 (20%)	-학습과제 충실도, 참여도, 발표 등의 종합평가	-개인과제물(30%) -조별과제물(70%)	실습담당 담당강사진
출석평가 (20%)	-출석 80% 이상	-과목별 출석(진도율) 80% 이상	교육기관
종합평가 (100%)	-학습평가 60% + 과제평가 20% + 출석평가 20%	-산술평균(70%이상 수료)	교육기관 평가담당자

■ 교육비(교재비 포함)

- 상시계측관리분야: 600,000원
- 입금계좌 : 하나은행 137-910018-09004 (예금주 : 사면재해경감협회)